

4. 교정치료 중 공간확보를 위해 미맹출인 제3대구치(사랑니) 치아 초기단계에 치아를 제거하는 경우 요양급여 대상여부

■ 진료내역

- A사례 (M/14세) - 내원일수 : 1일 ('12.8.14)
[진료기록] Block anesthesia #38 lidocaine 2A
germectomy, 치아분리 c surgical Bur
- B사례 (F/13세) - 내원일수 : 1일 ('14.9.10)
[진료기록] Block anesthesia #38 lidocaine 2A
germectomy, 치아분리 c surgical Bur

■ 심의내용

-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고시 제2010-75호, '10.10.1. 시행)에 의거 교정을 목적으로 시행한 발치는 비급여 대상임. 다만, 교정치료 과정 중이라도 질병의 상태(매복치, 치관주위염, 치아우식증 등)에서 발치(지치포함)를 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.
- 동 건의 2사례는 타 요양기관에서 교정치료 중 발치를 위해 의뢰 온 환자로 교정치료 중 공간 확보를 위해 미맹출인 제3대구치(사랑니) 치아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치아를 제거하고 비급여로 징수하여 심의함.
- 교과서, 관련학회 및 전문가에 의하면 상·하악 매복치의 경우 ROOT(뿌리)가 완성되는 시기는 18세~25세로 보며 매복치는 악궁내 총생(crowding), 맹출 경로의 비정상적인 위치 물리적인 장애물 등의 방해로 인하여 맹출에 실패한 치아를 말하며, '치배는 싹 시기부터 맹출 되기 전까지의 치아발생 구조물'이며 성장기 아동에서 제3대구치가 발육중인 경우 일반적으로 치아의 치근이 2/3이상 형성되지 않은 경우는 맹출 방향을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이시기까지는 치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음.
- 제출된 진료기록부 및 파노라마 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A사례(M/14세)는 '12.8.14일, B사례(F/13세)는 '14.9.10일 각각 초진 1회 내원하여 전달마취 하에 #38번 부위에 Surgical extraction(Germectomy)을 시행함.
또한, 진료기록부상 환자 상태에 대한 증상 기록이나 병적인 질병 상태가 관찰되지 않으며, 파노라마 영상자료에서도 비록 치관(Crown)이 칼슘화가 되어 있지만 치근이 3/2 이상 형성되지 않아 맹출 방향을 확실히 확인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됨.
따라서, 동 건의 2사례는 하악골에 제3대구치(사랑니) 치아 초기 단계에 해당되는 경우로 판단되며 병적인 질병상태로 보기 어려운 바, 비급여함이 타당함.